

# 하촌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2917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2. 2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5. 2. 2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5. 3. 17.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찬성의견

### 2. 제안설명의 요지(해양수산과장 백승열)

#### 가. 제안사유

- 하촌항 지구는 2017. 8월 지방어항 신규지정 후 어항현황 및 수산업 이용실태 등을 종합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어항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양장 신설과 준설토의 물양장 배면 매립을 통한 안전한 어선 계류시설 확충을 통한 어항기능을 향상시키고, 또한 기존 선착장 끝단에 방파제를 신설하여 항내 정온수역 확보와 월파 피해방지를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변경이 필요함

#### 나. 공유수면매립 사업개요

- 건 명: 지방어항(하촌항) 개발계획 수립
- 위 치: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일원
- 매립면적: 2,339m<sup>2</sup> (어항시설용지 조성)
  - \* 기본시설 958m<sup>2</sup> , 기능시설 1,188m<sup>2</sup> , 어항편익시설 193m<sup>2</sup>
- 시 행 자: 경상남도지사

#### 다. 추진경과

- 2019. 7. : 어항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경남도)
- 2023. 9. : 하촌항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처분 완료
- 2023. 9.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요청
- 2024. 1. : 하촌항 지구 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 실사
- 2025. 2.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매립타당성 결과 회신

### 3. 근거법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4.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정제)

#### ○ 제출 사유

-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어항(하촌항 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

#### ○ 주요 내용

##### [공유수면 매립 개요]

(위 치)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일원

(매립면적) 2,339㎡(어항시설용지 조성)

- 기본시설 958㎡, 기능시설 1,188㎡, 어항 편익시설 193㎡

(시 행 자) 경상남도지사

#### ○ 종합검토 의견

- 본 안건은 하촌항 지구 어항의 기능 향상 및 어민들의 불편해소와 월과 피해 예방을 위해 물양장 및 계류시설, 방파제 등의 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6. 토 론: 없음

7. 심사결과: 2025. 3. 17. 찬성의견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